의안번호	5124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의 원	유인호 의원 외 12 명
발의연월일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5124

발 의 년 월 일 : 2026년 09월 18일
발 의 의 원 : 유인호, 강해정, 곽효정, 김동호, 김창연, 김현미, 노종용, 박범종, 박병남, 안신일, 윤성규, 이순열, 정연희 의원(13명)

1. 제안이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의 장이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와 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도박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조사 결과의 기본계획 반영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조례의 현행성 및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박예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나.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연 2회 이상 운영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

다.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조제1항).

라. 도박예방교육을 학교의 장이 실시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마.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의무화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다.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붙임 3)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3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도록 노력”을 “반영”으로 한다.

제5조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학생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제3호 중 “주간을”을 “주간”으로 한다.

제10조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를 “관계”로,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매년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반영----------.
제5조(협의체 운영)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운영) ---------- ---------- 구성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도박예방교육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학생 도박

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	3. ---------- 주간 ----------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 관계 ---------- 구축해야 한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 「청소년 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민간의 건의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할 때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